

서울특별시의회
제306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

2022. 3. 29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
최영주

□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!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최영주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

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「예술인 복지법」 상

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

시장의 책무 사항을 신설하고,

축제 주최자와 참여 예술인간의 ‘문화예술용역’에 대한

계약체결시 고용보험료 납부,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

축제 참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노력의

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.

□ 또한 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를 통해

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이에 시장의 책무에 축제 참여 예술인의

지위와 권리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,

축제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사항을

규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축제 참여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
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